

「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」 신규 스타트업 선정 계획 통합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는 「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」의 일환으로, ①초격차 스타트업 육성과 ②딥테크 팁스에 참여할 신규 스타트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0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과 딥테크 팁스의 지원대상, 내용,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, 세부사항을 확인 후 각 사업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공고는 스타트업을 모집하기 전, 안내드리는 사전 공고이며, 사업별 스타트업 세부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.

1 모집개요

- [사업목적]** 초격차 10대 분야별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“초격차 스타트업” 육성
- [지원대상]**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

< 초격차 10대 분야 >	① 시스템반도체	② 바이오·헬스
③ 미래 모빌리티	④ 친환경·에너지	⑤ 로봇
⑥ 빅데이터·AI	⑦ 사이버보안·네트워크	⑧ 우주·항공·해양
⑨ 차세대 원전	⑩ 양자기술	

[지원내용]

- (초격차 스타트업 육성) ①사업화자금*(3년간 최대 6억원, 연 평균 1.5억원), ②기술개발자금**(최대 2년간, 최대 5억원)

*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후속지원(2년간, 최대 10억원, 연 평균 3.5억원) 별도

**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대상 별도 신청 및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예정

- (딥테크 팁스) ①기술개발자금(3년간 최대 15억원), ②사업화자금(1년간 최대 1억원), ③해외마케팅(1년간 최대 1억원)

* 세부 지원사항은 「2. 세부사업별 지원계획(3~8p)」를 통해 확인

<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 세부사업 비교 >

구분	구분	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(창업사업화 지원)	딥테크 팁스 (기술개발 지원)
지원개요	대상	·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	·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
	신규 선정 규모	· 232개사 내외 * (기본지원) 217개사 / (후속지원) 15개사	· 150개사 내외
	기간	· '24년 4월 ~ '26년 12월 (3년)	· (R&D) 선정시점부터 3년간 · (비R&D) 선정시점부터 10개월 * 접수·평가·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될 예정인 「팁스(TIPS) 통합공고」 참조 ** 비R&D: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
	한도	· (사업화) 기업당 최대 6억원(3년) * 연간 평균 지원금은 1.3~1.5억원 내외로, 별도 사업비 배정 평가 예정 · (기술개발) 기업당 최대 5억원(최대 2년) * 기술개발의 경우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대상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	· (R&D) 기업당 최대 15억원(3년) · (비R&D) 기업당 창업사업화· 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
	기업 부담금	· (사업화) 총사업비의 30% 내외(현물+현금) · (R&D) 연구개발자금의 20% 이상(현물+현금)	· (R&D) 연구개발자금의 20% 이상(현물+현금) · (비R&D) 총사업비의 30% 이상(현물+현금)
	프로 그램	· (기술고도화) R&D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기술·제품 완성 및 고도화 · (개방형 혁신) 글로벌 대·중견·대학 협업 매칭을 통한 신규 BM 창출 · (투자유치) 국내외 AC·VC로부터의 신규·대형 투자유치 촉진	· (액셀러레이팅) 팁스 운영사가 추천 창업기업 대상으로 보육·멘토링 지원 · (사무공간) 팁스타운 입주 희망시 우대 · (네트워킹) '팁스' 브랜드와 연계한 네트워킹·투자유치 관련 행사 참여 지원
선정방법	사업 신청	·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*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: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②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 → ③기본정보입력 및 주관기관 선택 → ④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→ ⑤제출	· 팁스 운영사가 중기부에 추천 * 창업기업은 개별단위로 신청 불가
	선정 평가	· 2단계(서류 → 발표) 평가 * 서류평가 :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* 발표평가 : 서류평가 통과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	·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3억원 이상 先투자 후 중기부에 추천 · 중기부가 추천 기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 진행

2

세부사업별 지원계획

①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(DIPS*)

※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사항, 모집내용은 본 공고('24년 2월초 예정)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DIPS : Deeptech Incubator Project for Startup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, 시장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
- (지원방향) 초격차 분야별 핵심기술·제품,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,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

□ 선정규모 : '24년 232개사 ('24년 신규 선정기업 기준)

< '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선정 규모(안) >

구분	기본지원 (3년 지원)	일반공모 (50%)		후속지원 (2년 지원)	합계
		일반공모 (50%)	민간·부처추천 (50%)		
시스템반도체	20개사	10개사	10개사	3개사	23개사
바이오헬스	37개사	19개사	18개사	8개사	45개사
미래 모빌리티	20개사	10개사	10개사	4개사	24개사
친환경·에너지	30개사	15개사	15개사	-	30개사
로봇	32개사	16개사	16개사	-	32개사
AI·빅데이터	35개사	18개사	17개사	-	35개사
사이버보안·네트워크	21개사	11개사	10개사	-	21개사
우주·항공	7개사	7개사	-	-	7개사
해양	5개사	5개사	-	-	5개사
차세대 원전	5개사	5개사	-	-	5개사
양자기술	5개사	5개사	-	-	5개사
합계	217개사	121개사	96개사	15개사	232개사

* (일반공모)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모집공모, (민간·부처추천) 국내외 대·중견기업 및 타부처로부터 우수 창업기업 추천·접수 (일반공모, 민간·부처 추천 등 3개 트랙 중 1개 트랙만 신청 가능하며, 우주·항공, 해양 등 일부 분야는 일반공모로만 선발 예정)

** (후속지원) 초격차 프로젝트(BIG3 포함)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·접수 예정

*** '24년 신규 선정 217개사 중 일반공모(121개사) 트랙에 한해 모집공고 예정이며, 향후 실제 추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공모, 민간·부처추천 트랙별 선정 규모 조정 가능

□ 지원내용

- (사업화) 기업당 최대 6억원 (3년 x연간 최대 2억원)
 - * 연간 평균 1.5억원 내외 기준, 별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예정
- (R&D) 기업당 최대 5억원(최대 2년x연간 최대 2.5억원)
 - * 기술개발의 경우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신청·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(선정 규모는 향후 별도 안내)
- (프로그램 지원) 신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대 프로그램(기술사업화, 개방형혁신, 투자유치) 지원
 - ① 기술사업화 : 출연연·전문생기연·대학 등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기술완성·고도화
 - ② 개방형혁신 : 글로벌 대·중견기업과 창업기업간 공동 R&D 등 협업 매칭 지원
 - ③ 투자유치 : 글로벌 현지 IR, 교육, 컨설팅, 글로벌 AC·VC 대상의 투자유치 촉진

□ 지원대상

- (신청자격)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* 이내 기업
 - *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
- (우대사항) 연구원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대·중견 간의 협업을 통해 사전발굴한 우수 창업기업에 가점 부여

< '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선정 기업 가점 부여(안) >

구분	기준
연구원 창업기업	·대표자(혹은 공동창업자)가 대·중견·대학·출연연 등 민간·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·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
초격차 챌린지 선정 기업	·'23년 초격차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' 선정기업 (5개사, '23. 12. 7 시상식 개최)

○ 지원 제외 대상

구분	제외대상
1	·그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중 BIG3,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(기업, 재참여 불가)
2	·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기관의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(기업) * 창업기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'창업사업화자금' 혹은 '사업화자금' 지원이 명시된 사업 * 창업기업 모집은 '24년 2월초에 시행되어 4월말 내외 선정확정 예정'이며, '24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, 협약은 1개 사업에 한해 가능 * 전시회 참가, 해외진출 등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(기업)은 신청·선정 가능 * 접수마감일 기준, 수행 중인 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·선정 가능 *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·선정 가능 * OpenAI & K-Startup Matching Day에서 최종선정된 예비창업팀, 창업기업은 '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한해 동시 신청·선정 가능하나, 사업화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*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내 양자 분야(BM 연계)에 선정되어 협약 중인 창업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'양자 기술' 분야에 신청할 경우, 2개 사업 동시 수행 가능 (정부지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)
3	·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
4	·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(총괄·전담·검직인력 등)에 소속된 자 (기업)
5	·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(기업)
6	·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(기업)
7	·근로기준법에 따라,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8	·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자 (기업, 참고3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참조) ·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정부지원금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(기업)
9	*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기업) *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
10	·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11	·'24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(기업)
12	·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□ [신청방법]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□ [평가절차]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(서류→발표) 평가

- (평가내용) 기업 보유기술·제품의 우수성, 비즈니스모델 등 사업의 혁신성, 글로벌 투자유치 등 향후 성장성을 종합 평가

□ [문의처]

구분	담당 기관	전화번호
전담기관	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	044-410-1681, 1682, 1683, 1684, 1687
사업 총괄(정책 문의)	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	(국번없이) 1357

□ [기타사항]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 공고 예정인 「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 창업기업 모집공고」를 참고

* 사전공고와 본 공고 간 상이한 내용이 있을 시, 본 공고문을 기준으로 선정

② 딥테크 팁스

※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「2024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·시험평가·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큰 딥테크 스타트업에 큰 규모의 자금 공급 필요
- (지원방향) 민간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 투자에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도모

□ **지원규모** : '24년 150개사 (R&D 신규과제 150개 +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)

□ **지원분야** : 「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」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

<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>

10대 분야	세부 분류(예)
① 시스템반도체	로직·아날로그 IC, 마이크로컴포넌트
② 바이오·헬스	의약, 임상기술, 의료기기
③ 미래모빌리티	전기·수소차, 자율주행
④ 친환경·에너지	자원순환, CCUS, 친환경 신소재, 신재생, 이차전지, 에너지 절감
⑤ 로봇	지능형·서비스 로봇, 스마트시스템
⑥ 빅데이터·AI	컴퓨터비전,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, 고객데이터플랫폼, AIoT
⑦ 사이버보안·네트워크	복호화, 블록체인, 5·6G, 무선통신, 클라우드, 메타버스, 모바일 엣지컴퓨팅
⑧ 우주항공·해양	위성, 발사체, 기지국, 비행체, 첨단선박
⑨ 차세대원전	원자로, 원전 재료, 안전기술
⑩ 양자기술	양자컴퓨터, 양자센서, 양자통신

□ 지원내용

- (R&D) 연구개발자금 최대 15억원 지원(최대 3년)
- (비R&D)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지원(최대 10개월)

□ 지원대상

- (신청자격) 기술력·사업성·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시장으로부터 검증받아 틱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
- (지원제외) 아래 표 참고
 - *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「2024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」를 통해 확인

<딥테크 틱스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>

- ① 틱스에 선정되어 지원(R&D, 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받은 창업기업(재참여 불가)
-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 - *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
- ③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
 - *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-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기타 개별 사업에서 '참여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[붙임 참조]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신청방법

- 틱스 운영사별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
 - * 창업기업이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틱스 운영사가 일괄 추천

□ 선정절차

- (사전검토) 신청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 자격(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중복성 등) 및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 적절성 검토
- (기술성 평가) 딥테크 분야 적합성, 기술의 파급성 등을 평가
- (시장성 평가)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
 - *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경우 시장성 평가 면제(패스트트랙)

- (최종 선정)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및 기간·지원 금액 결정

문의처

구 분		담당 기관	전화번호
R&D	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투자협력실	02-2280-0421
연계지원사업 (창업사업화/ 해외마케팅)	주관기관	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	02-3440-7421
	전담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	(국번없이) 1357
사업 총괄(정책 문의)		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	(국번없이) 1357
시스템 문의(기타)	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프로그램 홈페이지		www.jointips.or.kr, www.k-startup.go.kr, www.iris.go.kr	

기타사항

-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「2024년 틱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」를 참고

【붙임】

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- 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,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(기업)

연번	업태명
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2	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
3	가상화폐 거래소업
4	가상화폐 개발업
5	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
6	가상자산 취급업
7	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
8	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

* 단,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

** 기준 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